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악의 날 변경 및 법률에 명시〉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74호)

2026. 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국악의 날 변경 및 법률에 명시 등(안 제14조)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6. 1. 28.
3. 회 부 일 : 2026. 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악을 보전·계승하고 이를 육성·진흥하며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매년 6월 5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하고 있음.

국악의 날을 6월 5일로 지정한 이유는 국악곡인 ‘여민락(與民樂)’이 조선 세종 29년 6월 5일 실록에 최초로 기록된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한 것이지만, ‘여민락’이 민속악과 정악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6월 5일은 현재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이자 ‘국제 환경의 날’로 법정기념일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한글날’은 훈민정음 반포일을 상한(上澣)의 마지막 날로 환산하여 매년 10월 9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선 성종 24년에 조선시대의 의궤와 악보를 정리하여 편찬한 악서인 ‘악학궤범(樂學軌範)’의 편찬일인 1493년 8월 상한(上澣)의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

산한 날인 9월 29일을 국악의 날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악의 날을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치유하고, 우리나라 음악(국악)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문헌인 악학궤범 편찬일을 고려하여 매년 9월 29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III. 검토의견

1. 국악의 날 변경 및 법률에 명시 등(안 제14조)

개정안 제14조는 국악의 날을 매년 9월 29일로 하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와 학술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제2항).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국악의 날)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u><신 설></u>	제14조(국악의 날) ① ----- -----국악의 날은 매년 9월 29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자 포상</u> 4.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현행법 제14조¹⁾는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5조²⁾는 국악의 날을 매년 6월 5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와 학술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해당 행사 등을 하는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국악진흥법」

제14조(국악의 날) 국악의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한다.

2)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5조(국악의 날) ① 법 제14조에 따른 국악의 날은 매년 **6월 5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1.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학술행사
2.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경연대회
3.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분야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국악 진흥 및 국악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을 하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을 규정하는 방식으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 1]³⁾에 규정하는 방식,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 법률에 직접 기념일의 날짜를 명시하는 방식 및 하위 법령에서 날짜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분됨(참고 “정부 기념일 현황”).

국악의 날은 「국악진흥법」 제정과정에서 국악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태어난 날 등 국악 관련 기념일자 중 어떤 날짜를 선택할지에 대하여 국악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날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결정된 바 있음⁴⁾.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국악의 날 지정을 위해 전국 권역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고, 강원권은 9월 28일(세종의 음악정리), 충청권은 6월 5일(여민락의 최초 기록), 호남권은 9월 29일(악학궤범 편찬일), 서울·수도권은 행사가 적은 3월에서 6월 사이를, 경상권은 12월 말을 각각 제안한 바 있고⁵⁾, 결과적으로 6월 5일이 국악의 날로 최종 확정되었음.

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기념일 등) ①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그 주관 부처 및 행사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부가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할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시행해야 한다.

4) ‘제404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소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23. 3. 21., p.9

5) “‘국악의 날’ 제정의 문화론적 함의”, 서울문화투데이, 2025. 6. 18.

그러나,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6월 5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환경의 날로 지정되어 있어 법정기념일의 중복으로 인한 국민의 관심 분산 등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다른 정부 주관 기념일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전하여진 악기와 노래 등을 종합적으로 집대성해 음악적 의의를 가지는 악학궤범⁶⁾의 편찬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인 9월 29일을 국악의 날로 법률에 명시하여, 국악의 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확산시켜 전통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됨.

아울러,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의 날이 속하는 달에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관련 문화예술행사와 학술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과 해당 행사 등을 하는 기관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국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취해 국악을 육성·진흥하며, 국악문

6)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악학궤범’(권1(이론)·권2(악현)·권3~5(정재)·권6~7(악기)·권8(의물)·권9(의상))은 1493년(성종 24)에 예조판서 성현(成俔), 장악원 제조(提調) 유자광 등이 함께 왕명을 받아 궁중음악과 궁중무용을 비롯한 당시 음악문화의 총체를 정리한 악서로, ‘악학궤범’에 수록된 아악·당악·향악 중 민간음악에 해당하는 악곡·악기·기보법 등은 오늘날 정악의 영역으로 흡수 및 변화되었다고 함.

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국악의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악의 날의 날짜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현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는바, 국악의 날의 날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의 입법 실익 및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악의 날 지정 배경이 된 ‘여민락(與民樂)’은 악곡명이 아닌 ‘음악으로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단어의 의미를 수용한 것으로 여민락이 표방하는 위민(爲民) 정신은 정악과 민속악을 아우르는 국악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의견과 함께,

악학궤범에는 현재 전승되는 정악과 민속악 중 민속악이 빠져있으므로 악학궤범의 편찬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인 9월 29일을 국악의 날로 할 경우 민속악이 배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또한, 기획예산처는 지역문화행사 및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⁷⁾에 따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이므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이

로 개정안 제14조제3항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아울러,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우선, 사단법인 국악진흥회는 국악의 날은 이미 6월 5일을 기준으로 각종 기념행사와 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날짜 변경 시 현장의 혼란 및 행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환경의 날과의 날짜 중복으로 인한 문제는 기념사업의 내실화 및 홍보 강화 등 운영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 국악방송은 국악의 날을 지정하기 이전에 많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현재 날짜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다음,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법률에 지정된 국악의 날 날짜를 명시하고 세부조항을 두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국악의 날 이외에도 기념일은 다수 중복

지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범위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표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제4조제1항 단서 관련)

- 201. 지역문화행사 지원
- 202.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되고 있어 중복을 이유로 국악의 날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마지막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국악계 현장과의 대담에서 공연이 몰리는 3~4월, 9~10월을 비껴서 국악의 날을 지정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 9월 29일은 추석 연휴와 겹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국악의 날 행사로 대국민홍보를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84

참고

정부 기념일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에 따른 기념일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1	2·28민주운동 기념일	2. 28.	국가보훈부
2	납세자의 날	3. 3.	재정경제부
3	3·8민주의거 기념일	3. 8.	국가보훈부
4	3·15의거 기념일	3. 15.	국가보훈부
5	상공의 날	3월 셋째 수요일	산업통상부
6	서해수호의 날	3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7	4·3희생자 추념일	4. 3.	행정안전부
8	예비군의 날	4월 첫째 금요일	국방부
9	식목일	4. 5.	농림축산식품부
10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11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4. 11.	국가보훈부
12	4·19혁명 기념일	4. 19.	국가보훈부
13	장애인의 날	4. 20.	보건복지부
14	과학의 날	4. 2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	정보통신의 날	4.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6	법의 날	4. 25.	법무부
17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4. 28.	문화체육관광부
18	순직의무군경의 날	4월 넷째 금요일	국가보훈부
19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20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21	아버지 날	5. 8.	보건복지부
22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5. 11.	문화체육관광부
23	스승의 날	5. 15.	교육부
24	세종대왕 나신 날	5. 15.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유산청
25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5. 18.	국가보훈부
26	부부의 날	5. 21.	성평등가족부
27	성년의 날	5월 셋째 월요일	성평등가족부

번호	기념일	날짜	주관 부처
28	우주항공의 날	5. 27.	우주항공청
29	바다의 날	5. 31.	해양수산부
30	의병의 날	6. 1.	행정안전부
31	환경의 날	6. 5.	기후에너지환경부
32	현충일	6. 6.	국가보훈부
33	6·10민주항쟁 기념일	6. 10.	행정안전부
34	6·10만세운동기념일	6. 10.	국가보훈부
35	6·25전쟁일	6. 25.	국가보훈부
36	철도의 날	6. 28.	국토교통부
37	정보보호의 날	7월 둘째 수요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행정안전부 · 국가정보원
38	북한이탈주민의 날	7. 14.	통일부
39	푸른 하늘의 날	9. 7.	외교부 · 기후에너지환경부
40	국군의 날	10. 1.	국방부
41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42	세계 한인의 날	10. 5.	재외동포청
43	재향군인의 날	10. 8.	국가보훈부
44	스포츠의 날	10. 15.	문화체육 관광부
45	부마민주항쟁 기념일	10. 16.	행정안전부
46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요일	문화체육관광부
47	경찰의 날	10. 21.	행정안전부
48	국제연합일	10. 24.	외교부
49	교정의 날	10. 28.	법무부
50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10. 29.	행정안전부 · 산업통상부
51	금융의 날	10월 마지막 화요일	금융위원회
52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11. 3.	교육부 · 국가보훈부
53	농업인의 날	11. 11.	농림축산 식품부
54	순국선열의 날	11. 17.	국가보훈부
55	소비자의 날	12. 3.	공정거래위원회
56	무역의 날	12. 5.	산업통상부
57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후에너지 환경부 · 원자력안전위원회

□ 개별법령에 의해 지정된 기념일 (2025. 12. 기준)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	해양안전의날	매월 1일	해양수산부	해사안전법
2	안전점검의 날	매월 4일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3	한국수어의 날	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4	한국수어 주간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화언어법
5	문화유산 방재의날	2.10.	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법
6	희귀질환 극복의 날	2월의 마지막날	보건복지부	희귀질환관리법
7	국립공원의 날	3. 3.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공원법
8	여성의 날	3. 8.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9	흙의 날	3.11.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10	의용소방대의 날	3.19.	소방청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	암 예방의 날	3.21.	보건복지부	암관리법
12	결핵 예방의 날	3.24.	질병관리청	결핵예방법
13	수산인의날	4. 1.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14	보건의 날	4. 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15	전기의 날	4.10.	산업통상부	전기산업발전기본법
16	편의증진의 날	4.10.	보건복지부	장애인등편의법
17	도시농업의 날	4.11.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법
18	도서관의 날	4.12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19	도서관 주간	4.12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법
20	국민안전의 날	4.16.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21	장애인의 날	4.20.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2	장애인 주간	4.20.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23	자전거의 날	4.22.	행정안전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24	새마을의 날	4.22.	행정안전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25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4.28.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26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	4.28.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스포츠 주간	4월 마지막 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28	청소년의 달	5월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기본법
29	가정의 달	5월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30	근로자의 날	5. 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31	씨름의 날	음력 5.5.	문화체육관광부	씨름진흥법
32	어린이 날	5. 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33	어버이 날	5. 8.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34	유권자의 날	5.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5	유권자 주간	5.10.부터 1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36	바다식목일	5.10.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법
37	한부모가족의 날	5.10.	성평등가족부	한부모지원법
38	양잠인의 날	5.10.	농림축산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9	입양의 날	5.11.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0	입양주간	5.11.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입양특례법
41	식품안전주간	5.7.~5.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2	식품안전의 날	5.1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43	가정의 날	5.15.	성평등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44	발명의 날	5.19.	특허청	발명진흥법
45	세계인의 날	5.20.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6	세계인주간	5.20.부터 1주간	법무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47	문화다양성의 날	5.2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8	문화다양성 주간	5.21.부터 1주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49	방재의 날	5.25.	행정안전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50	실종아동의 날	5.25.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51	실종아동주간	5.25.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2	의료기기의 날	5.2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53	중소기업주간	5월 셋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54	통일교육주간	5월 넷째 주	통일부	통일교육지원법
55	남녀고용평등강조기간	5.25.~5.31.	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6	해외파병용사의 날	5.29.	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7	환경교육주간	환경의 날(6.5)이 포함된 1주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교육법
58	국악의 날	6. 5.	문화체육관광부	국악진흥법
59	구강보건의날	6. 9.	보건복지부	구강보건법
60	기록의 날	6. 9.	행정안전부	공공기록물법
61	헌혈자의 날	6.14.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
62	노인학대예방의 날	6.15.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63	해양조사의날	6.21.	해양수산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64	장애인학대예방의날	6.22.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법
65	선원의 날	6월 셋째 주 금요일	해양수산부	선원법
66	전자정부의 날	6.24.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
67	마약퇴치의 날	6.26.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68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	6.28.	통일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69	사회적기업의 날	7. 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70	사회적기업 주간	7.1.부터 1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
71	협동조합의날	7월 첫째 토	재정경제부	협동조합기본법
72	협동조합 주간	협동조합의 날 이전1주간	재정경제부	협동조합기본법
73	여성기업주간	7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74	도농교류의 날	7. 7.	농림축산식품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75	방위산업의 날	7. 8.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6	인구의날	7.11.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7	연안안전의 날	7.18.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8	연안안전점검 주간	7월 셋째 주	해양경찰청	연안사고예방법
79	유엔(UN)군 참전의 날	7.27.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80	섬의 날	8. 8.	행정안전부	섬 발전 촉진법
81	이산가족의 날	추석 전전날 (음력 8월 13일)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82	일본군위안부피해자기림 의 날	8.14.	성평등가족부	위안부피해자법
83	양성평등주간	9.1.~9.7.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4	양성평등 임금의 날	양성평등주간 (9.1.~9.7.)중 하루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5	통계의 날	9. 1.	통계청	통계법
86	여권통문의 날	9. 1.	성평등가족부	양성평등기본법
87	태권도의 날	9. 4.	문화체육관광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88	지식재산의 날	9. 4.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기본법
89	고향사랑의 날	9. 4.	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
90	사회복지의 날	9. 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91	화장품의 날	9. 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92	사회복지주간	9.7.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93	곤충의 날	9.7.	농림축산식품부	곤충산업법
94	생명나눔 주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	보건복지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95	숙련기술인의 날	9.9.	고용노동부	숙련기술장려법
96	자살예방의 날	9.10.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97	자살예방 주간	9.10.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98	해양경찰의 날	9.10.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99	산업단지의 날	9.14.	산업통상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00	성매매 추방주간	9.19.~9.25.	성평등가족부	성매매피해자보호법
101	연안정화의 날	9월 셋째 토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02	청년의 날	9월 셋째 토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103	청년주간	청년의날부터 1주간	국무조정실	청년기본법
104	치매극복의 날	9.21.	보건복지부	치매관리법
105	조달의 날	9.30.	조달청	조달사업법
106	개인정보보호의 날	9.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107	군인가족의 날	9월 넷째 금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108	경로의 달	10월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09	노인의 날	10. 2.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110	동물보호의 날	10. 4.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111	세계 한인의날	10. 5.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12	세계한인주간	10.3.~10.9.	재외동포청	재외동포기본법
113	임산부의 날	10.10.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114	정신건강의 날	10.1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15	정신건강주간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116	여성어업인의날	10.10.	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117	스포츠의 날 (前체육의날)	10.15.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기본법
118	여성농업인의 날	10.15.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3조의2
119	호스피스의 날	10월 둘째 주 토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법
120	문화의 날	10월 셋째 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본법
121	회계의 날	10.31.	금융위원회	외부감사법
122	동반성장주간	11월 첫째 주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123	임업인의 날	11. 1.	산림청	임업진흥법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24	손상예방의 날	11. 1.	질병관리청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5	수소의 날	11. 2.	산업통상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6	한글 점자의 날	11. 4.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7	한글 점자 주간	한글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	문화체육관광부	점자법
128	소상공인의 날	11. 5.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29	소상공인 주간	소상공인의 날 이전1주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
130	소방의 날	11. 9.	소방청	소방기본법
131	보행자의 날	11.11.	국토교통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132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날	11.11.	국가보훈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133	농업인의 날	11.11.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34	약의 날	11.18.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135	아동학대예방의날	11.19.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6	아동학대예방주간	11.19부터 1주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137	김치의 날	11.22.	농림축산식품부	김치산업 진흥법
138	민원의 날	11.24.	행정안전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139	중견기업주간	11월 셋째 주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140	가정폭력추방주간	11.25.~12.1.	성평등가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1	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법
142	여성폭력추방 주간	11.25.~12.1.	성평등가족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143	자원봉사자의 날	12. 5.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4	자원봉사주간	12.5부터 1주일간	행정안전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145	국가유산의 날	12. 9.	국가유산청	국가유산기본법
146	기부의날	12월 둘째 월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연번	명 칭	기념일	주관부처	근거법령 등
147	기부주간	12월 둘째 주간	행정안전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148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12.23.	해양경찰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